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7. 19.
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박종길 의원 등 7명(손범구, 장호섭, 김정희, 이진환, 정창근, 도하석)
- 발의일자: 2024. 7. 5.(금)
- 회부일자: 2024. 7. 5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4. 7. 19.)

2. 개정이유

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이 규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서 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 및 제16조)
-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-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-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-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 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」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4. 7. 5. ~ 7. 15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·환경만을 포함하는 “녹색성장”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경제·사회·환경을 포괄하는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이 시행됨에 따라,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」 중 환경보전시책을 위한 구민참여추진기구인 ‘지속가능발전협의회’ 규정을 삭제하고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에 관련법령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‘지속가능발전협의회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안 제15조(협의회 설치 등)부터 제17조(협의회 구성 등)에서는 협의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20조(경비의 지원)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, 포용적 사회,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 등 우리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 범위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